

규제영향분석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목 차>

1.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요건(전문인력 요건)

특허청

< 규제 개요 >

1. 규제사무명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요건(전문인력 요건)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특허청	작성 자	이름	이은정
	담당부서 (과)	지역산업재산과		직급	서기관
	국장	김태만		연락처	042-481-5171
	과장	박주연		이메일	ejlee05@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발명진흥법, 동법 시행령,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규모		
	피규제자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 및 직원	170명/ 30개 센터		
	이해관계자	중소기업	연간 수혜기업 3만개		
	관련정부기관	시·도	-		
5. 규제존속기한	없음 - 양질의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등록요건 존속 필요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학위 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요건 중 전문 인력 기준 강화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p>지역지식재산센터를 등록하려는 자(운영기관) 특허청장에 신청 -> 등록요건 검토(전문인력 및 시설확보 현황 등) -> 등록 및 고시</p> <p>※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 수행 기관</p>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학위 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요건 중 전문 인력 기준 강화**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5]</p>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제9조제2항 관련)</p> <p>1. 상담실 및 사무공간을 갖출 것</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허정보 검색, 전자출원 및 특허지도 작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p> <p style="padding-left: 20px;">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p> <p style="padding-left: 20px;">라.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p> <p style="padding-left: 20px;">마.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p>	<p>[별표 5]</p>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제9조제2항 관련)</p> <p>1. (좌동)</p> <p>2. (좌동)</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변리사, 기술사, 기술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p> <p style="padding-left: 20px;">나. 기술 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p> <p style="padding-left: 20px;">다.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특허정보분석사, 특허정보검색사 등 지식재산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지식재산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p> <p style="padding-left: 20px;">라. 대학의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지식재산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p> <p style="padding-left: 20px;">마. 기타 위와 동등한 것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자</p>

1. 규제 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과 지자체 5:5 매칭으로 운영되는 국비, 지방비 예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
- 지역주민의 지식재산인식제고와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강화 등 공공성이 강한 컨설팅 기반의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을 수행함

< 참고 >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 사업 현황

- 목적 : 지역의 종합적인 근접 지식재산 지원 인프라의 거점기관으로 지식재산 민원서비스 및 지원을 One-stop으로 해결
- ① IP스타기업 육성사업('15년 228억원)

	IP Start-Up 기업 지원 (목적 : IP 인식 제고)	⇒	IP Scale-Up 기업 지원 (목적 : IP 경쟁력 강화)	⇒	IP Star 기업 육성 (목적 : 지속적 IP 경영)
대상 기업	IP 도입기 기업		IP 성장기 기업		IP 성숙기 기업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 인큐베이팅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국내·외 권리 획득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권리 획득 지원 선택형 IP 지원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맞춤형 특허맵 지원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 경영전략 컨설팅 IP 종합지원(3개년 계획) 등

* 컨설턴트 주도 사업 운영 : 스타기업에 대한 IP 경영전략 컨설팅 뿐만 아니라 IP 인큐베이팅,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선택형 IP 지원, 지재산 교육 등 컨설턴트가 직접 추진
 용역사 주도 사업 운영 : 컨설턴트가 PM으로 참여하면서 결과물 관리
- ② 지역지식재산 인프라 구축('15년 48억원)
 - 지식재산권 교육, 발명진흥행사,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고도화·권리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문화 정착 추진

- 지원사업의 공공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지식재산 센터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
-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센터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 전문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지식재산 경영컨설팅 등에 품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중소기업은 오히려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피해 발생 우려 상존

< 참고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결산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분포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 대상의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IP스타기업 육성 등 지원사업과 함께 예비창업자, 지역 주민 대상의 지재권 상담, 발명행사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17개 광역지식재산센터에서는 특허, 브랜드, 디자인 분야의 전문인력 총 76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전문인력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아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및 지원사업의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 즉, 지식재산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수준인 지식재산능력시험 2등급 이상의 소지자가 76명 중 1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간단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3등급 이하를 보유하고 있음. 특히, 그 중 26명은 문외한과 다름없는 무급자로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지역의 지식재산창출지원 기관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경영 컨설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원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컨설턴트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특허청은 컨설턴트가 지식재산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능력시험 2등급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신규 컨설턴트 채용 시 엄격한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컨설턴트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지역지식재산센터가 국고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및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 사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인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 필요

다. 규제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목표

-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을 통해 성장 지원

○ 하위목표

-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 인력이 창출지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학위 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요건 강화
-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밀착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지원을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선행기술조사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운영비용 절감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최소한의 자격기준 >

○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등 현행 전문 인력에 관한 자격기준 그대로 유지

- 변리사 자격
- 산업재산권 분야 학사학위
- 특허정보 검색, 전자 출원, 특허지도 작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
- 전문대졸+특허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자격증 소지

< 비규제대안 : 자격 未 규정 >

○ 전문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규정하지 않음

< 규제대안 1 :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기준 >

○ 지식재산 분야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경력·학위 등을 보완·강화하는 방안

- 변리사, 기술사, 기술거래사 자격
- 기술 / 지식재산 분야 박사학위
- 기업가치평가사, 특허정보분석사, 특허정보 검색사 등 지식재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지식재산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
- 대학학사 + 지식재산 관련분야 5년 경력
- 위와 동등한 것으로 자격 인정되는 자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현행유지안) 전문 인력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아 지식재산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담보할 수 없음

- (비규제대안) 전문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의 효과성 확보 곤란
- (규제대안)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재산분야 자격·경력·학위 등 요건을 보완하여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강화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홍보, 기업 지원 등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으로, 민간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임
 - 센터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전문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 명칭을 사용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중소기업 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
- 경영컨설팅 등 지식재산 전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임

< 해외사례 분석 >

- 일본의 경우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지재종합지원창구를 설치 운영 중이며 **상담인력 자격기준 역시 5년 이상의 지재권 관련 경력자임**

< 참고 > 일본 지재종합지원창구 현황

-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상담지원 요구에 따라 일본 특허청은 '11.4월부터 지재종합지원창구를 설치
- 현재 47개 도도부현에 57개소 설치, 창구담당자 157명 배치
 - (운영기관) 지역발명협회(일반사단법인) 38개소, 지역산업진흥센터(공익재단

법인) 12개소, 기타 기업진흥센터 등

- (예산) 일본 특허청 예산만으로 운영
 - * '11년 18.5억엔→'12년 18.1억엔→'13년 19.4억엔→'14년 21.9억엔
- (인력) 지원창구 담당자는 운영기관의 직원이며, 평균 2~3명 배치
 - * 담당자는 기업 등에서 5년 이상의 지재권 업무 수행 경력 필요

< 타법사례 분석 >

- 유사 타법 사례 없음

< 위임근거 검토 >

- 발명진흥법 제23조 제4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고 위임근거가 명확함

< 참고 > 발명진흥법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3.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③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⑧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특허청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⑪ 특허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이해관계자 협의 >

- 지역센터(센터장, 컨설턴트)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일선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센터(센터장, 컨설턴트)와의 간담회(8월, 10월, 12월 등)를 통해 컨설턴트 전문성 제고 방안 등 논의
 - 전문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다수였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현재 전문인력 규정은 대내·외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기 부족하고 각 호 기준의 수준이 크게 상이하고, 상호 모순적이어서 전문 인력 자격요건으로 부적합
 - 변리사(나호)는 전문성이 인정되나, 해당분야 경력이 없는 산업재산권 분야 학사 등은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전문성이 없는 컨설턴트의 질 낮은 컨설팅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할 우려

< 결론 >

-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의 공익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
- 지식재산분야의 전문성, 지원사업의 효과성 수행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할 때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필수 불가결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5	202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 최소한의 자격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1 :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78.32	278.32	2,226.61	2,226.61	-1,948.29	-1,948.2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278.32	278.32	2,226.61	2,226.61	-1,948.29	-1,948.29
기업순비용		-1,948.29		연간균등순비용		-245	-245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현행유지안 : 최소한의 자격기준>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②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
- ③ 정부 :

정성적 분석	현재 전문인력 규정은 대내·외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기 부족하고 각 호 기준의 수준이 크게 상이하여 전문인력 자격 요건으로 부적합
--------	---

<규제대안 1 :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기준>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278.32백만

업무제목	센터 근무인력의 전문성 교육 비용
설명	센터의 전문인력에 대한 강화된 자격기준이 기존 인력에게 소급 적용 되지는 않지만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직접비용으로 계상
세분류	지역지식재산센터
활동제목	센터 근무 인력의 전문성 교육 비용
비용항목	교육훈련
비용	278,326,832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수강비 [교육 대상자수(70) X 연간 교육 횟수(1) X (수강료(500000) X 교육과정비(0)) X 피규제자 수(1)]
근거설명	현재 요건에 전문컨설턴트가 다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계산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특허정보분석사, 특허정보검색사 등 지식재산관련 분야 민간 자격증의 평균 교육 비용)
세분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을 원하는 자
활동제목	전문인력 확보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활동비용 특성	일시적

산식	신규센터 인력[1]*인건비 증가분[0]
근거설명	<p>현재 16개 광역시도에는 이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개설되어 있고, 도 단위에 추가적으로 기초센터를 14개 운영하고 있어 추가적인 센터 설립 수요는 향후 10년간 많지 않을 전망</p> <p>다만,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센터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향후 10년 내 추가로 개설될 가능성이 높지만, 채용인력 규모(1개 센터의 개소 시 채용인력 1~2명)를 고려할 때 특정 기업이나 국민의 비용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p> <p>* 향후 자격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은 '0'원으로 계상</p>

□ 직접편익 :2,226.61백만

(정량)제목	사업 운영의 비용 절감
금액	2,226,614,669
산식	<p>매년 280백만원*의 비용 절감 편익 발생</p> <p>* 40만원(1건당 선행기술조사비용) * 10건(전문인력 1명이 1년에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최소 건수) * 70명(현재 센터 전문인력)</p>
근거설명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직접 전문상담 및 컨설팅이 가능한 경우 상담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수행함으로써 절약되는 선행기술조사비용이 편익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

□ 간접비용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

간접편익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	--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

②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

③ 정부 :

정성적 분석	
--------	--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심사 시 현행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보완·강화한 것이기 행정적·재정적으로 집행 가능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심사 시 현행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보완·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집행 가능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지자체 위임사무가 아님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지원기관에 대한 규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음

< 경쟁영향평가 >

- 지역지식재산센터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등록요건은 필수불가결함

- 일정한 등록요건 없이 센터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능력이 미달되는 기관이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운영될 경우 국민 및 중소기업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익사업 수행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갖춘 전문성을 가진 적정수의 기관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 지식재산분야 전문 컨설팅은 변리사와 같은 전문 자격을 가진 자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
 - 일본 지재종합창구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만을 채용하고 있음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지역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질 높은 전문 컨설팅 제공함으로써 연간 280백만원*의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40만원(1건당 선행기술조사비용) * 10건(전문인력 1명이 수행하는 1년간 최소 선행기술조사건수) * 70명(전문인력 수)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센터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 기준 강화 뿐 아니라 현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전문성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자체적인 전문성 강화 노력도 해 나가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 현재 행정인력의 경우에도 전문인력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 전문인력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어 운영지침 등에 반영 예정

* 지역지식재산센터 총괄 워크샵(2015.12.19.-20, 제주) 등